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 규정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204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 규정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8월 18일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어장환경 조사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업인 입장에서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는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어장환경 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1.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장환경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장환경 조사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 ----- ----- ----- ----- ----- ----- -----,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함되어야 한다.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

2. 어업권·양식업권 현황

3. 어장의 불법임대 및 불법 구조

물 설치 등 어장 관리 현황

4.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5. 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

6.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7.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
-----주기 및-----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조에 따르면¹⁾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현행법 시행령 제5조²⁾에서는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어장관리법」

-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어장관리법 시행령」

-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
 2. 어업권·양식업권 현황
 3.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4. 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
 5.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6.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는 직접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나 관계자에 대한 면접, 문헌조사 방법 등 간접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그런데, 어장환경 조사는 어업인이 어업 활동을 하는 어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 내용 및 방법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조사에 대한 어업인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어장환경 조사가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어장환경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장환경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장환경 조사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어장환경 조사의 구체적인 항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어업인의 예측 가능성, 조사의 투명성 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는 어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에 어장환경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 및 국가적 어장관리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특히, 안 제6조제5항의 경우(자료요구권)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이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 다만, 어장환경 조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경우 어장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

-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행령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지 않고, 어장환경조사 결과는 현재도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은 부칙과 관련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시행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만일 안 제6조제5항의 자료요구권과 관련된 조문만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시행일 변경은 불필요할 것이고, 어장환경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의견처럼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8